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87
----------	-------

발의연월일 : 2026. 3. 11.

발 의 자 : 정연욱 · 김소희 · 박정하
서지영 · 이성권 · 신성범
이종배 · 이헌승 · 진종오
조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선박,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응급장비의 설치 간격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시설이나 장소에 따라서는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신속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특히,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우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개방성이 높으며 특정 시설이 아닌 해당 공간 전체를 다수의 이용객이 이동·체류하는 장소임에도 현행법령은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을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어, 응급상황에서 응급장비가 설치된 위치까지 접근하는 데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이에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응급장비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 및 제5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되어 실제 운영 중인 관광
지 및 관광단지

제47조의2제5항 중 “관리”를 “설치 위치, 설치 간격 등의 설치기준과
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응급장비의 설치기준은 이용자의 응급장비 접근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장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라 응급장비를 갖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
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응급장비를 갖
추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 ----- ----- ----- ----- -----.
1. ~ 6의2. (생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되어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
7. (생략)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⑤ ----- -----설치 위치, 설치 간격 등의 설치기준과 관리--- ----- ----- 이 경우 응급장 비의 설치기준은 이용자의 응 급장비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

<u>도록 정하여야 한다.</u>
